



도민이 중심
신뢰받는 의회

제4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24. 4. 23.(화) 10:00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 주민 의견
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

교 육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 주민 의견 제출
등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: 박용규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: 2024년 4월 12일
- 회부일자: 2024년 4월 12일

3. 제안 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2021. 1. 12. 개정, 2022. 1. 13. 시행)에 따라 제20조(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 의견 제출)가 신설되어 주민이 그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대한 제정,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게 되었고, 의견 제출과 제출된 의견의 검토 등에 관한 방법 및 절차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되어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 ~ 안 제2조)
- 교육감의 책무(안 제3조)
-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4조)

- 의견제출 제외 대상(안 제5조)
- 의견제출 방법(안 제6조)
- 보완요구 등(안 제7조)
- 검토 및 통보(안 제8조)
- 의견의 반영(안 제9조)
- 차별대우의 금지 등(안 제10조)
- 비밀 준수의 의무 등(안 제11조)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 제정 이유

- 본 제정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이 전부개정(21.1.12.)됨에 따라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에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의견제출,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〈표 4〉 타 시도교육청 조례 제정 현황

(2024. 3. 기준)

	시도	조례명	공포일자	구분
1	전북	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주민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	2023. 11. 10.	타법개정
2	서울	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	2023. 10. 05.	제정
3	울산	울산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	2022. 12. 29.	제정
4	경기	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주민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	2022. 10. 31.	일부개정
5	세종	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주민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	2022. 08. 10.	제정
6	경남	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	2022. 07. 07.	제정

※ 자료출처: 자치법규정보시스템

나.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

- 본 조례안은 총 11개 조항의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각 조문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.
- 안 제1조에서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음.
- 안 제3조에는 지방자치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한 경우,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.
- 안 제4조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례를 따를 것을 규정함.
- 안 제5조에서는 「지방자치법」 제2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제외 대상을 규정함.
- 안 제6조는 의견제출서 서식, 내용, 공동으로 의견제출할 경우 대표자 표시 등 의견제출 방법에 관해 규정함.
- 안 제7조는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 요구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 소관일 때 처리 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함.
- 안 제8조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소관부서의 장이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북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, 의견제출서가

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도록 규정함.

- 안 제9조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규칙을 제정, 개정 또는 폐지하도록 규정함.
-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 대한 차별대우 금지와 의견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준수할 것을 규정함

다. 종합의견

- 본 조례안은 개정된 「지방자치법」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에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, 의견 제출 및 검토 등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주민의 권리 및 참여를 적극 보장하는 한편,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와 법적 근거, 제정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특히, 본 조례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 제정, 개정 또는 폐지에 있어 제한적인 간접참여에서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민 참여로 확대되어 지방자치 실현을 한층 강화하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.